
동물복지 강화 방안(안)

2022. 12.



목 차



I. 추진 배경	1
II. 선진국 동물복지정책 동향	2
III. 국내 동물복지정책 추진 상황 및 시사점	9
IV. 동물복지 강화 비전 및 전략	13
V. 세부 추진 계획	14
1. 동물복지 강화 추진기반 마련	14
2.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확대	18
3. 동물 보호·복지 사후 조치 실질화	26
4. 정책 조정 및 집행을 위한 추진체계 개선	30
VI. 향후 일정	31

I. 추진 배경

□ 개정 「동물보호법」 시행(‘23.4) 대비 세부 제도 마련 및 현장 지원

- 동물학대 예방,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전부 개정된(‘22.4) 「동물보호법」(7장 55조→ 8장 4절 101조) 하위법령 마련 필요(23.4. 시행)
 - * (주요내용) ①동물학대 학대자 수강:이수명령제, 사육계획서 의무화, ②안전관리 일반견 관리의무 확대, 사고견 맹견지정, 맹견사육허가수입신고제, ③유실·유기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, 동물인수제
- 반려견 기질평가제,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등 신규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한 현장 지원 방안 마련

□ 새롭게 주목받는 동물복지 이슈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

- 동물보호단체는 미흡한 제도·정책에 대해 개선의견* 지속 제기
 - * (주요내용) 학대행위자 동물사육금지,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, 피학대동물 구조·보호 실질화(동물보호단체 역할 확대 등), 민간동물보호시설 지원·관리 강화 등
 - 언론에서는 개물림 사고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 부과, 동물 학대 처벌 강화 등을 요구하는 보도* 증가
 - * 주요보도(‘22.8~10월) : 울산 초등생 개물림 사고, 평택역 가방 속 포메라니안 학대, 트럭에 개 매달고 운전 등 다수 보도
- ※ 「동물복지 5개년(‘20~’24) 종합계획」 주요과제 추진상황도 함께 검토

□ 급증하는 동물복지정책 수요에 대응한 정책 방향 정립 필요

- 제한된 인력·재원으로 급증하는 동물복지 민원*, 현장 대응 등에 한계
 - * (‘20) 6,154건(농식품부 전체 민원의 33.0%) → (‘21) 9,012건(50.5%)
- 역사가 긴 해외 선진국의 동물복지 정책·흐름을 참고하여 우리의 수준을 진단하고 우선순위 정립, 단계적 추진방안 마련 등 필요

☞ **선진국 동향과 국내 실태**의 면밀한 분석을 거쳐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, 세부추진 계획 마련

II. 주요 선진국 동물복지정책 동향

1 동물보호·복지 정책의 흐름

□ (정책범위) 학대 금지에서 시작, 복지(good life) 보장으로 확대

- 가축학대 방지(영국), 실험동물 보호(미국)를 위해 동물보호 정책 시작
- 동물의 기본적 욕구(생활, 영양, 습성, 치료 등)를 충족시키는 동물복지 강화 방향으로 확대(미국, 영국, 독일, 스위스 등)

※ (참고)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의 비교

	동물보호 (Animal Protection)	동물복지 (Animal Welfare)
의미	▶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걱정하게 보호·관리하는 것(「동물보호법」 제1조 목적조항)	▶ 건강하고, 안락하며, 좋은 영양 및 안전한 상황에서 본래의 습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, 고통·두려움·괴롭힘 등의 나쁜 상태를 겪지 않는 것(세계동물보건기구)
입법례	▶ 오스트리아·대만·일본 등	▶ 영국·미국·스위스·뉴질랜드·독일 등

□ (법적지위) 물적 보호대상에서 헌법적 존엄성 인정까지 확대

- 대체로 동물을 「민법」상 물건이 아닌 제3의 지위를 가진 존재로 인정하면서 소유자 의무·자격 등을 강하게 규정

- ▶ (독일) 개물림 사고 및 학대 예방을 위해 반려견 면허제(필기·실기시험) 운영
- ▶ (미국) 가정폭력 발생 시 여성이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보호

- 스위스, 독일 등에서는 반려동물 보호나 존엄성을 헌법에 명시

- ▶ (스위스) 최초로 동물의 존엄성을 헌법에 명시(1973)
- ▶ (독일) 동물보호 책임을 헌법적 가치로 규정(2002, 헌법 제20a조)

□ (적용대상) 농장·실험·반려동물을 넘어 모든 동물로 확대 경향

○ 선진국은 보호 대상 동물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경향

- ▶ (독일) 동물보호법에서 살아있는 모든 동물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보호
- ▶ (영국) 포유류 등 척추동물을 넘어 갑각류·두족류 등 지각 있는 존재(Sentient Beings)로 인정하는 등 적용대상 동물 범위 크게 확대('22)
- ▶ (스위스) 유희성 낚시 금지, 살아있는 어류의 유기 금지 등 어류도 실질적 보호

○ 질병·상해 예방을 넘어 동물의 정상적인 행동을 존중하고, 학대 금지행위 등을 동물 종류별로 차등화하는 경우도 있음

- ▶ (영국) 동물의 고통 여부에 초점을 맞춘 동물보호 기준 제시
- ▶ (스위스) 집단생활을 하는 고양이·기니피그 등은 여러 마리 키울 것, 개는 매일 사람·동물과 교류를 가질 것, 물고기는 낮과 밤을 체감토록 관리 등
- ▶ (독일) 학대 처벌 규정을 차등화(예: 척추동물 학대 형사처벌, 그 외 질서위반법)

□ (법체계) 「동물보호법」 → 동물복지법, 정책분야별 법률 제정

○ 대부분 동물보호법을 먼저 제정한 후 동물복지법으로 전환

- ▶ (미국) 실험동물 보호(동물복지법, 1966)에서 동물운송, 개·고양이 거래 등 확대
- ▶ (영국) 최초로 동물보호법(1911) 제정 후 현재는 동물복지법(2006)으로 개편·운용

○ 동물학대, 맹견, 공연동물 등 분야별로 별도의 법률 제정

국가	법률명	비고
영국	▶ 동물복지법(2006), 개 브리딩 및 판매법(1999), 위험한 개법(1991), 공연동물규제법(1925) 등	
미국	▶ 동물복지법(1966), 동물학대·고문방지법(2019), 반려동물·여성 안전법(2018), 동물싸움관람금지법(2014), 28시간법(1873) 등	주별로 별도규정 존재
독일	▶ 동물보호법(1972), 동물복지 개 규정(2001, 법규명령), 개보유법(2016, 베를린주) 등	

□ (반려동물) 가구 50% 이상 양육, 학대·돌봄·영업 등 의무·규제 강화

- 선진국은 대체로 반려동물 양육률이 50~60%로 높은 경향
 - * 반려동물 양육률 : 미국 70%, 영국 59%, 프랑스 65%, 독일 47%, 싱가포르 36% 등
- 학대범위가 넓고, 소유자 자격, 돌봄 의무 및 반려동물 상업적 판매 제한 등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

□ (실험동물) 불필요한 실험 및 고통 최소화 등 실험 관리 강화

- 동물실험의 대체방법을 개발하고, 실험동물의 공급처를 제한
 - ▶ (프랑스) 국가동물실험위원회를 설치하여 실험 대체방법 개발·자문
 - ▶ (영국) 실험동물은 「동물(과학절차)법」에서 인정하는 시설에서 공급받도록 제한
- EU 등에서는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경향
 - ▶ (EU)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(2004), 동물실험 화장품의 생산·판매 금지(2013)
 - ▶ (미국) 동물실험을 통해 개발·생산된 화장품의 판매·수입 등 금지(캘리포니아, 2020)

□ (농장동물) 동물복지 기준 강화 및 동물복지축산 소비 활성화

- 밀집 사육으로 인한 질병 발생 등을 야기하는 축산방식 제한 추세
 - ▶ (EU) 산란계 폐쇄형(Battery) 케이지 사육금지(2012), 어미돼지 임신틀(Stall) 사육제한(2013)
 - (폐쇄형 케이지) '99년 강화 → '12년 시행, (임신틀) '01년 강화 → '13년 시행
 - ▶ (독일) 산란계 수평아리 도태 금지(2022) / (영국) 도축장 내 CCTV 설치 의무화(2018)
- 직불금 등 보조금과 동물복지의무 준수를 연계(Cross-Compliance) 하고 있으며, 동물복지 인증(민간 주도)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경향
 - ▶ (EU) 직불제 지급조건인 교차준수의무(cross-compliance)에 동물복지 의무가 반영되어 있고, 더 높은 수준의 행위는 농업인과의 협약을 통해 비용 지원
 - ▶ (영국) 동물복지 인증 계란 출하 비율 지속 증가('16:40% → '18:45% → '20:54%)

1 동물학대 (Animal Cruelty)

□ (학대) 잔혹행위를 넘어 **동물에게 고통**을 주었는지로 판단 경향

-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었는지를 기준으로 학대행위를 규정하며, 미용 등의 목적으로 동물의 신체부위를 절단하는 행위 금지

- ▶ (싱가포르) 동물에 오랫동안 올라타거나, 무거운 짐을 싣게 하는 행위 금지
- ▶ (미국) 불필요하게 과로 유발 또는 고통을 주는 행위 금지(플로리다주), 고양이 손톱 절단 행위 금지(뉴욕주, 메릴랜드주)
- ▶ (독일·영국 등) 치료 외의 목적으로 개의 신체부위 절단 금지
- ▶ (스위스) 유희성 낚시 금지, 살아있는 물고기의 미끼 활용 금지

- 일부 국가는 과실로 인한 행위도 학대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음

- ▶ (대만) 과실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의 행위 처벌

□ (처벌) 처벌 강화 + **교육·소유금지·신상공개** 등 추가조치 확대 추세

- 동물학대 처벌은 6개월~7년(징역형 최고형량 기준)으로 다양하며,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추세

- ▶ (프랑스) 2년, (독일) 3년, (호주) 5년, (미국) 7년('19년), (일본) 2년 → 5년 상향('20년)
- ▶ (영국) 6개월 → 5년(검토 중) / (오스트리아) 1년 → 2년(형법 개정 중)

- 형사처벌과 함께 심리치료·교육이수명령, 동물 압류·몰수 등을 병과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추세

- ▶ (미국) 동물 소유 금지(캘리포니아주), 학대행위자 신상공개(테네시주), 동물의 압류·몰수(펜실베이니아주), 심리치료·상담·교육 명령 부과(유타주 등 30여개 주) 등
- ▶ (프랑스) 동물의 압류·몰수, 관련 직업 또는 사회적 활동 제한(5년 내) 등
- ▶ (독일) 학대행위자의 반려동물 소유 금지(학대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, 1~5년)

② 반려동물(Companion animals)의 복지 및 관리

□ (돌봄·소유) 돌봄의무 범위가 넓고 처벌 강함, 소유 자격도 존재

- 소유자에게 적절한 먹이·휴식 제공, 질병 시 치료 등 기본의무를 부과하며, 위반 시 처벌 등을 통해 의무이행 담보

- ▶ (독일) 돌보는 사람과의 충분한 접촉, 자연 채광 보장, 생후 8주 내 모견과 분리 금지 등을 규정하고, 위반 시 최대 25,000유로의 벌금 부과
- ▶ (영국) 돌봄 모범 관행(good practice)이 준수되지 않거나 반려동물이 방치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RSPCA 동물복지조사관(Inspector)이 개선 요구 통지
- ▶ (미국) 먹이, 물, 쉼터 제공 등 소유자 의무 위반 시 경범죄로 처벌(일리노이주)

- 일부 지역(주단위)에서 반려견 면허제, 입양 전 교육 의무 등 시행

- ▶ (독일) 개물림사고 및 학대 예방 목적에서 입양 전 필기시험 및 입양 후 1년 내 실기시험 통과를 의무화(니더작센주)
- ▶ (스위스) 반려견 양육 시 의무교육제(이론·실습 포함)를 도입('08)하였으나, 이후 폐지하고('17) 일부 주(제네바주 등) 단위에서 의무교육제 유지

□ (개물림사고) 목줄, 기질평가 및 맹견관리 등 예방적 조치 강화

- 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장소 목줄 착용 등 관리의무를 규정하며, 일부 국가는 사고견에 대해 맹견지정, 압수, 안락사 등 조치

- ▶ (미국) 사고견은 기질평가(Canine Good Citizen Test)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 가능하며, 사육장소 통제, 외출 시 지정한 목줄 착용 등 의무 부과(워싱턴주)
- ▶ (독일) 사고견은 기질평가를 통해 사육 허가를 받고, 불허 시 소유권 박탈 등 조치(니더작센주)
- ▶ (호주) 사고견은 위험견으로 분류되어 목줄·입마개 착용 등 의무를 준수
- ▶ (프랑스) 사고견은 기질평가(1단계 → 4단계: 매우위험)를 거쳐 안락사 권고 가능

- 일부 국가는 5개 내외의 맹견 종을 지정하면서 맹견의 번식·수입·사육을 금지하거나, 사육을 허가하며 엄격한 관리의무 부과

- ▶ (영국) 핏불테리어 등 4종 맹견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기질평가사육허가제 운영
- ▶ (독일) 핏불테리어 등 4종 맹견과 주*에서 정한 맹견 수입 금지, 기질평가사육허가제 운영
* (베를린) 도사 등 7종 추가, (함부르크) 로트와일러 등 11종 추가 등
- ▶ (미국) 주별로 정하는 맹견 종에 대하여 강화된 의무(사육장소 통제, 외출 시 지정 목줄 사용 등)를 부과하고,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의무 면제(2년 갱신)

③ 유실·유기동물의 발생 예방 및 보호

□ (동물등록) 반려견 중심, **내장칩**이 기본이며 20~90% 등록

- 대다수 국가에서 반려견에 대해 동물등록 의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, 일부 국가에서는 고양이, 패럿 등으로 대상 확대

- ▶ (미국) 지역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~6개월이 넘는 개(일부 주는 고양이 포함)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1~3년 주기로 등록 갱신 요구
- ▶ (영국) 생후 8주 내 개 등록 의무화(고양이는 자율)하며 갱신 불요
- ▶ (프랑스) 개, 고양이, 패럿의 등록을 의무화(그 외 포유류 자율)하고 있으며 갱신 불요

- 동물등록 방식은 내장칩을 기본으로 하며, 일부 국가에서는 문신이나 태그(인식표) 방식을 허용

- ▶ (미국) 내장칩을 기본으로 하되 문신으로 대체 가능(펜실베이니아주)
- ▶ (영국) 내장칩 등록 의무화 / (프랑스) 내장칩 또는 문신 방식 등록 의무화
- ▶ (독일) 대다수 주가 모든 개에 내장칩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, 일부 주는 일반견은 태그 허용, 맹견은 내장칩 의무화 등으로 차등 적용(헤센주)

- 동물등록률은 20~90%로 나라별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

- ▶ (프랑스) 개·고양이 등록률 78% / (영국) 개 92% / (뉴질랜드) 개 45%, 고양이 36%
- ▶ (미국) 주별로 다양하며,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(콜로라도주 18% 뉴멕시코주 20% 등)
 - 모든 주에서 1~3년 갱신제를 운영하고 있어 등록률이 낮은 것으로 추정

□ (구조·보호) 유실·유기동물의 **구조·보호** 방식은 국가별로 다름

- 대체로 민간단체가 유실·유기동물의 구조·보호를 주도하고 있으나, 정부(지자체 포함)가 직접 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기도 함

- ▶ (영국) 동물보호단체(RSPCA 등)가 유실·유기 동물 구조·입양 등 역할 수행(약 200년)
- ▶ (미국) 민간 구조·구호단체가 많으며, 시설기준을 갖춘 민간의 동물보호소 운영을 인정(캘리포니아주)하거나, 정부가 직접 동물보호소를 운영(뉴저지주)
- ▶ (독일) 지자체별로 동물보호단체 등에 동물보호소를 위탁하여 운영
- ▶ (일본·대만) 지방정부가 직접 동물보호소 운영(일부는 위탁)

4 영업 관리(생산·판매·장묘업 등)

□ (인허가) 상업적 번식·판매에 대한 허가 또는 자격 규정

- 대부분 선진국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개·고양이 등을 번식 또는 판매하려면 사육시설 등 기준을 갖춰 허가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할 필요

▶ (영국·미국) 반려동물 번식 등을 위해서는 시설 등 기준을 갖춰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, 갱신제 운영(영국 1년, 미국 3년)

□ (행위제한) 펫숍 판매 및 질병을 유발하는 근친교배 제한 경향

- 충동적인 반려동물 입양을 막기 위해 펫숍,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브리더를 통한 직접 분양만 가능토록 규제 강화 추세

▶ (벨기에·핀란드·독일) 펫숍 등에서 판매 금지, 브리더 직접 판매만 허용

▶ (영국) 6개월 미만 개·고양이 펫숍·온라인 판매 금지 및 브리더 직접 판매만 허용

- 일부 국가에서는 인위적인 근친교배*를 통한 단두종(Flat Faced Dog) 번식을 학대로 판단하거나 금지 * 호흡곤란, 높은 안압 등 유전적 질환 우려

▶ (네덜란드) 퍼그, 불독, 복서 등 20개 품종의 단두종 개의 교배를 금지하나, 체력·건강검사를 통과한 개는 예외적으로 브리딩 허가(2019)

▶ (노르웨이) 불독과 '카발리에 킹 찰스 스파니얼'(단두종)의 교배를 동물학대로 판결

□ (세분화) 반려동물 장례문화가 발전했고, 영업유형별 구분 관리

- 대부분의 나라에서 소각, 매장 등의 사체 처리 방식을 허용하고 지역별로 장묘시설을 구축하는 등 장례문화 보편화

▶ (프랑스) 사유지나 동물 묘지에 매장 허용, 수거용 쓰레기로 투기 금지, 30여개 도시에 반려동물 묘지 운영 중(약 10개소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)

▶ (미국) 동물 매장 허용, 동물 장묘시설은 750여개로 추산(주정부 또는 비영리단체 운영)

- 관리 필요성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며, 갱신제를 통해 지속 감독

▶ (미국) 영업면허를 동물번식업자(ClassA), 동물판매·이송·경매업자(ClassB), 동물 전시·공연업자(ClassC)로 구분하여 발급하고, 3년마다 갱신

▶ (일본) 판매·보관·임대·훈련·전시 등 동물을 취급업자를 제1종(영리)과 제2종(비영리)으로 구분하여 등록하고 5년마다 갱신

Ⅲ. 국내 동물복지정책 추진 상황 및 시사점

1 주요 정책 동향

□ (법체계) 동물보호법이 있으며, 동물이 민법상 물건으로 규정

- 「동물보호법(1991. 제정)」을 통해 동물학대, 반려견 안전관리, 동물 영업, 동물복지축산, 동물실험 등 전반을 규정
- 헌법이나 민법에서 동물의 지위나 보호 필요성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,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*

* 동물학대 시 재물손괴죄 적용, 동물 학대에 대한 양형상 한계 등과 연결

□ (대상) 반려동물 중심으로 정책이 발전, 농장동물은 초기단계

- 반려가구 증가*에 따라 반려동물 관리·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
* 반려동물 양육가구수(추정) : ('10) 335만가구 → ('15) 457 → ('19) 591 → ('21) 606
- 반려견 등록·관리, 유실·유기동물 보호 인프라 구축, 길고양이·마당개 중성화, 대국민 교육·홍보 등에 대해 재정 지원
- 농장동물 복지 기준을 마련하고, 이행기간 부여* 등 속도 조절
* 산란계 사육밀도 완화('18 도입, 기존 농가 '25), 돼지 고정틀 제한('20 도입, 기존농가 '30)
※ 복지축산 인증농가('21 기준) : 산란계 190개 농가(전체 농가의 20.2%), 육계 131(8.7%), 양돈 16(0.3%), 젓소 26(0.5%), 한우 1(0.001%)

□ (이슈) 학대와 개물림사고에 대응한 제도 개선 중점 추진

- 학대행위 처벌 강화,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지속
* 동물을 학대하여 죽이는 행위 : ('21) 징역2년/벌금2천만원 → 3년/3천만원
개물림사고 : ('19년) 맹견소유자 정기교육 이수 등 의무부과 및 과태료 상향(50→300), ('21) 맹견책임보험 의무 가입, ('22) 목줄 길이 제한(2m이내) 및 주택 실내 이동 통제
- 학대범위, 소유자 자격·돌봄의무, 학대 행위자 반려동물 소유 제한 및 공장식 영업 규제 등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

구분		주요 선진국 동향	우리나라
법체계	양육	동물보호법 → 동물복지법 → 헌법(존엄성) (일본) (영국·미국·독일) (독일, 스위스)	동물보호법
	자격	정책이 확대되면서 분야별로 법률을 제정 * (영국) 개 브리딩·판매법, 위험한 개법 등, (독일) 개보유법 등, (미국) 반려동물·여성 안전법, 동물학대 및 고문방지법 등	
보호 범위		척추동물을 넘어 보호 동물 대상을 대폭 확대 * (독일) 살아있는 모든 동물, (영국) 갑각류, 두족류 등 보호범위 확대, (스위스) 어류에 대한 실질적 보호 규정 적용	척추동물로 한정 * 식용목적 어류 제외
소유·관리	양육	싱가포르 36%, 독일 47%, 영국 59%, 프랑스 65%, 미국 70%	26.9% 양육('21)
	자격	반려견 면허제 등 자격, 입양 전 교육 의무 요구 * (독일) 면허제(니더작센주), (스위스) 의무 교육제(취리히)	미도입
	돌봄	반려동물의 돌봄의무를 폭넓게 부여하고, 위반 시 처벌 * (미국) 먹이 제공 등 위반 시 경범죄 (독일) 사람과의 충분한 접촉, 자연 채광 보장 등 위반 시 벌금	위반 미처벌
	안전관리	물림사고를 일으킨 개에 대해 기질평가, 입마개 착용 등 조치 * (미국) 기질평가 후 맹견 지정, 관리의무 부과, (독일) 개 압수 등, (호주) 입마개 의무화, (프랑스) 기질평가 후 사육허가 맹견 관리 의무가 강하고, 번식·수입·사육 금지 국가도 존재 * (미국) 사육장소 통제, 맹견표시 등 강화된 의무 부과 (영국·독일) 맹견의 번식·수입·사육 등 원칙적 금지	기질평가지 마련('24.4.시행) 입마개 등 의무 사육허가제 마련('24.4.시행)
학대	행위	동물 질병·상해 유발 → 고통 발생 → 정상적인 행동 존중 (일본) (영국·독일) (스위스)	상해·죽음 시 학대 인정
	처벌	영국 6개월, 프랑스 2년, 독일 3년, 일본·호주 5년, 미국 7년 등 (미국) 동물 소유금지, 학대행위자 신상공개, 동물 압류·몰수 등, (프랑스) 동물 압류·몰수, 관련 직업 금지, (독일) 동물 소유 금지	3년 미도입
동물등록	비율	뉴질랜드(개) 45%, 프랑스(개·고양이) 78%, 영국(개) 92%	54% 등록('21)
	방식	내장칩을 기본으로 하되, 문신(미국·프랑스)이나 태그(독일) 허용	내·외장칩
영업	관리체계	영리/비영리, 관리 필요성(번식~전시) 등에 따라 영업을 분류하며, 갱신제(영국 1년, 미국 3년, 일본 5년)로 운영	영업 8종 갱신제 미도입
	판매제한	영업허가 규정 → 펫숍·온라인 판매 제한 → 근친교배 제한 (미국 일부 주) (영국·독일·벨기에) (네덜란드·노르웨이)	판매제한 등에 대한 제한 없음
	동물장례	동물 장례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으며, 매장 방식 허용 * (미국 일부 주, 프랑스 등) 주정부에서 장묘시설 운영	동물 매장 금지 * 장묘업(화장 등) 등록
유기동물 구조·보호		민간단체가 구조·보호를 주도하고 있으며, 정부(지자체)가 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기도 함(일본, 대만, 미국 일부 주)	지자체 센터 및 민간시설 운영
동물실험		미국·EU는 화장품 동물실험 원칙적 금지	화장품 동물실험 원칙적 금지

3 국내 동물복지정책 발전 시사점

□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선진제도를 빠르게 도입 및 확대

- 「동물보호법」 제정(1991) 이후 총 10차례 개정*(전부개정 3회)을 통해 다양한 제도를 빠르게 도입
 - * '17~'22년 사이 6회 개정(전부개정 1회)하여 연 1회 이상 법률 개정
- 동물등록 의무화('14), 학대행위 처벌 강화(최대 3년/3천만원, '21), 맹견 안전관리 제도 도입('19) 등 분야별 제도적 틀 구축

□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현장 정착·인식이 미흡한 측면

- 학대 및 개물림 사고는 증가 추세, 동물등록률은 선진국 대비 낮음
 - * 동물학대 증가(112 신고건수, '21: 월평균 458건→ '22: 538) 및 처벌 미약('16~'21, 실형 17명), 개물림 사고 지속 발생('19: 2,154명→ '21: 2,197), 동물등록률 54%('21 기준)
- 국가·지자체 인력·조직 부족으로 현장 단속, 민원 대응 등 역부족
 - * 동물보호·복지 전담인력 평균 1.8명(기초지자체 기준, '22)
 - * 동물복지 민원 : ('20) 6,154건(농식품부 전체 민원의 33.0%) → ('21) 9,012건(50.5%)
-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대국민 홍보를 통한 현장 확산과 함께,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 캠페인 필요성 제기

□ 이해집단이 많고 다양하며, 이해관계 대립이 심함

- 국내 144개의 동물보호단체*(등록된 비영리법인 기준, '21)가 있으며, 이슈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정책 우선순위 선정 등이 어려움
 - * 동물보호단체 중 중앙정부에 등록된 단체 7개, 지자체 등록 137개
- 동물보호·복지 강화 이슈에 대해 동물보호단체, 반려동물 영업자 및 농장동물 협회 등의 이견이 큼
 - * 예) 동물 영업 운영기준 강화(CCTV 설치 등) 관련 동물보호단체·영업자·수의사 간 갈등

□ 사후적 처벌 중심이며, 사전·예방적 조치는 미흡

- 학대나 개물림 사고에 대한 사후 형벌 규정*은 선진국 수준임
 - * 최고 3년 이하 징역 및 3천 만원 이하 벌금
- 선진국은 학대, 개물림 사고 등이 발생 또는 재발하지 않도록 소유자 자격·의무, 학대 범위 및 처벌, 영업제한 등 제도 발전

<동물보호·복지 관련 사전예방적 제도 비교>

제도 내용	주요 선진국	우리나라
동물의 법적 지위	• 제3의 지위(물건 아님)	• 물건
반려견 소유 자격	• 면허제, 입양전 교육 등	• 별도 제한 없음
돌봄 의무 및 처벌	• 의무 위반 시 처벌	• 위반시 처벌 없음
학대 여부 판단	• 동물의 고통 여부	• 상해 및 사망
학대 처벌	• 형벌 + 신상 공개, 소유금지 등	• 형벌
맹견 사육	• 번식·수입·사육 원천적 금지	• 사육허가제 마련('24.4)
영업 관리 체계	• 갱신제 운용	• 갱신제 미도입
판매 제한	• 펫숍·온라인 판매 금지	• 판매 가능

□ 동물복지 관점에서 일관된 제도 미구축, 낮은 사회적 수용성

- 선진국은 동물보호를 넘어 동물복지의 관점에서 법·정책 운용
 - 영국은 동물복지 의무(Guardianship)를 정부의 책임(Responsibility)으로 규정(정책, 집행, 감시, 정보제공 등을 포함)
 - 반려동물의 출생(생산)부터 소유 및 돌봄까지 의무와 규제가 강함
 - 대상동물의 범위가 매우 넓고(용도에 따라 차별하지 않음), 가해자(인간)가 아닌 피해자(동물)*의 입장에서 접근하려는 경향
 - * 학대를 동물의 상해 여부가 아니라 동물이 고통을 당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
- 영국 등에서는 오랜 역사를 가진 민간단체가 교육·홍보, 동물 구조·보호 등에서 적극적인 역할 수행
 - * 영국 동물학대방지단체(RSPCA, 1824년~) 및 미국 동물복지협회(AWI, 1951년~)는 동물 구조·보호, 교육·홍보, 입법청원, 관련 소송 수행 등 폭넓은 역할 수행

IV. 동물복지 강화 비전 및 전략

비전

동물복지를 강화하여 사람·동물 모두 행복한 **One-Welfare** 실현

달성
목표

◇ 동물학대·유기 없는 성숙한 동물 돌봄 체계 구축

- * 연간 유실·유기 발생 : ('21년) 12만마리 → ('27년) 6만마리
- 유실·유기동물 입양·기증률 : ('21년) 33% → ('27년) 50%

◇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

- * 동물등록률 : ('21년) 53.4% → ('27년) 70%
- 개물림사고 : ('21년) 2,100명 → ('27년) 1,000명

추진 전략

주요 과제

전략
및
과제

1. 동물복지 강화
추진 기반 마련



- (제도) 동물복지 중심으로 법체계 개편
- (인식) 동물복지 사회적 수용성 개선
- (통계) 정기 실태조사 및 통합정보체계 구축

2. 사전예방적 정책
도입 확대



- (돌봄) 반려동물 소유자 돌봄 의무 확대
- (학대) 범위 확대* 및 재발방지 강화
- * 상해·죽음 유발 → 고통을 주는 행위
- (동물유기) 등록 활성화 등 예방책 마련
- (개물림사고) 맹견·사고견 양육영업관리 강화
- (영업·실험·농장) 상업적 이용의 관리·투명성 제고

3. 동물보호·복지
사후조치 실질화



- (학대) 현장 대응, 처벌 등 실효성 강화
- (동물유기) 보호시설 개선 및 입양 활성화

추진
체계

- 동물복지 정책의 논의·조정을 위한 폭넓은 거버넌스 구축
- 동물복지를 전담하여 추진할 중앙·지방단위 추진체계 마련

V. 세부 추진 계획

1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추진기반 마련

◇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틀 마련, 사회적 수용성 개선 및 동물복지 통계 구축 추진

① 동물복지 중심으로 법체계 개편

□ (법체계)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 관점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틀 마련

- 출생(생산)부터 죽음까지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동물의 건강·영양·안전 및 습성에 대한 존중 등 동물복지 요소 확대
 - 용어 수정(사육·소유자 등), 돌봄의무(정상적인 행동 보장), 학대범위 확대(상해·죽음 → 고통), 실험동물의 윤리적 이용 등 사전예방적 제도 확충
- 「민법」 상 물건이 아닌 제3의 지위 인정 검토 등과 연계하여 동물의 법적 위상을 강화

□ (방안) 통합 「동물복지법」 제정 또는 분야별 법률 제정·분리(24)

- 국내외 사례 연구,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법률안 마련(23)
 - (1안) 동물보호법을 포괄하는 「동물복지법」을 제정(또는 전면개정)
 - (2안) 「동물복지법」을 기본(동물복지 원칙 등)으로 반려동물, 학대방지, 농장동물 등 분야별로 특화된 법체계 구축

※ 스위스 : 「동물복지법(1978)」

- 동물 사육, 축산·운송·도축, 동물 및 동물 제품의 거래, 동물실험 등 동물복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

※ 미국 : 「동물복지법(1966)」 및 동물보호 관련 여러 법률

- 실험동물 보호에서 시작하여 실험·전시·반려동물의 번식·운송·판매 등을 규정
- 동물학대, 축산동물 등의 개별 분야에 대해서는 「동물학대·고문 방지법」, 「28시간법」 등 개별법 제정·운용

② 민간이 주도하여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개선

□ (단체) 동물복지 인식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동물보호단체와 협력

- 선진국과 같이, 동물보호단체(법인 등)가 동물복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 추진
 - 동물보호단체의 조직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 개최, 공익광고 제작 등 교육·홍보 사업 위탁('23~)
 - * 예) 동물복지 관점에서 유실 예방 캠페인, 반려동물 돌봄·관리 등
- 동물학대 방지, 유실·유기동물 보호 등과 관련한 신규 제도의 현장 집행력 제고를 위해 동물보호단체 협업 강화('23~)
 - * 예) 동물사육계획서 점검, 유실·유기동물 입양 시 교육, 동물복지 이슈 공동연구 등

※ 영국 : 동물학대방지 자선단체(RSPCA, 1824년 설립)

- 동물복지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, 교육 및 입법청원 등을 활발히 수행
- 동물복지와 관련된 기준(학대·구조·반환 등)을 마련하여 현장 적용 및 공유

※ 미국 : 동물복지협회(Animal Welfare Institute, 1951년 설립)

- 동물복지 인식 제고 활동으로 공모전, 연령별 교육프로그램, 장학금 지급, 경찰·검찰·FBI 등에 수사 정보제공·자문 등 수행

□ (산업) 동물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육성

- 주요 선진국과 같이 건전한 반려동물양육, 동물복지수준 향상 등이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
 - * 영업자 등 이해관계자, 기재부·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「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대책」 마련·추진('23.1분기)

※ 사례 : 미국의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 산업 성장

- (양육) 2021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전체의 70%로, 처음 조사가 실시되었던 1998년 56%와 비교하면 10%p 넘게 증가
- (산업) 2016년말 기준 반려동물 관련산업 규모 약 668억 달러로, 1996년부터 연평균 5.9% 성장

- 동물복지 강화와 연관산업·지역경제가 조화될 수 있는 반려동물 특화 사업 발굴·지원(신규사업 추진, '24~)

※ 호주 : 퀸즐랜드주 동물복지와 연계한 반려동물 산업박람회

- 퀸즐랜드주 최대규모 반려동물 산업박람회(Gold Coast Pet & Animal Expo)에서 동물복지 인식 제고, 보호동물 입양 캠페인, 미용·용품 등 업계별 전시·판매 부스 운영

※ 영국 : Malton Town의 애견친화정책

- 2018년 Malton Town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애견친화마을(Dog Friendly Town)로 선정된 후, 식당 등 상점 매출 증가
- * 마을 전체 매장의 90%가 반려견 동반 출입 가능, 음식점의 경우 반려견을 위한 간식 무료 제공, 도로 곳곳에 반려견을 위한 물그릇 비치

□ (인식) 동물복지 수준에 대한 정기 평가 및 이해 제고 활동 강화

- 매년 동물 돌봄 영향보고서를 발간하여 동물 보호·복지 개선에 대한 실태 평가 및 공유(연구기관·단체 협업, '24)

※ 미국 : 농무부의 동물 돌봄 영향보고서(Animal Care Impact Report)

- 농무부 산하기관인 동식물검역국에서 동물돌봄프로그램(「동물복지법」 준수, 「말보호법」 관리, 동물의 안전·복지 관리 등) 운영
- * 연간 고용·예산, 현장점검, 동물학대 수사·처벌, 동물보호면허 발급, 보호활동 지원, 반려동물 안전 관련 투자 등 포함

- 반려동물 양육의 효과성 등의 국내외 연구 및 조사결과를 공개·홍보하고, 동물복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('24)

※ 미국 : Human-Animal Bond Research Institute

- (기관개요) 사람과 동물의 유대감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안정, 아동의 발달 등 사람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과학적 연구 수행 및 홍보
- (주요 연구내용) 응답자 72%가 사람-동물의 유대가 지역사회에 도움된다고 응답, 생후 1년간 고양이와 같이 산 경우 고양이 알레르기 발생 48% 감소 등

③ 양육·돌봄 실태 등 동물복지 정기 실태조사 및 통합정보체계 구축

□ (정기 survey) 매년 반려동물 양육 실태 및 산업규모 조사 발표

- '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'를 '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'로 개편하고,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방식·대상 개선* 및 돌봄실태 등 파악('23. 통계청 협업)
- * (현행) 성인 5,000명 대상 온라인패널조사 → (개선 예시) 표본수 확대, 대면조사 병행 등
- 매년 반려동물 연관산업규모 파악('24. 농촌경제연구원 등)

□ (통합정보) 동물복지 제고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 공개

-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구축,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정보 연계
 - 기관별로 생성·관리하는 정보*에 대해서는 연계·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 마련(관계기관 정보요청, '23.4. 시행) 법
 - * 개물림사고(소방청), 기질평가견 및 소유자(경찰청 등), 반려동물 영업(지자체), 동물실험윤리위원회(실험기관), 국가소유 봉사동물 현황(경찰·소방·국토부 등) 등
 - 맹견 수입신고(수입·사육 현황 등), 기질평가(사고 견종, 피해 등) 등 제도 도입에 따라 그간 확인이 어려웠던 정보 수집
 - * ('22) 예산 확보 → ('23) 정보화전략계획(ISP) 수립 → ('24~) 시스템 구축 및 운영
- 동물보호시설 운영, 반려동물 영업 현황, 동물실험 실태 등 동물복지에 관한 정보를 일반 국민 대상으로 공개하여 접근성 강화('24~)

<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주요 내용(안)>

분류		정보 보유	관리계획	협조기관
반려동물	동물의 보호·복지 실태	x	생성·관리	통계청
	등록대상동물의 등록	지자체	정보 연계	
	동물보호시설 및 유실·유기동물 현황	지자체	정보 연계	
	맹견 및 사고견 기질평가, 사육허가	x	생성·관리	경찰청·소방청
	반려동물 영업 현황 및 실적	지자체	정보 연계	
실험동물	동물실험윤리위원회 및 전담수의사	실험기관	정보 연계	
축산동물	동물복지축산 농가 및 축산물 현황	검역본부	정보 연계	
기타동물	국가 소유 봉사동물 관리 현황	개별 기관	정보 연계	경찰청·소방청 국토교통부 등

◇ 반려동물 돌봄 문화 형성 및 동물학대·유기등 예방 제도 도입·확대

① 반려동물 소유자의 돌봄 제공 강화

□ (입양 전 교육) 반려동물 양육 관련 소양·지식 등 사전 교육 활성화

- 온라인 교육플랫폼을 이용자 친화형*으로 개편하고, 반려동물 입양예정자 등을 위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·제공('22~)

* 강의별 수강신청 기능 제공, Open API를 통해 타 교육플랫폼과 연계 등

※ 동물사랑배움터(apms.epis.or.kr) 반려동물 입양예정자 교육프로그램('22~)

- ▶ 대상 : 반려동물 입양을 고려 중인 사람 등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
- ▶ 주요내용 : 입양 전 알아야 할 사항, 반려동물과 올바른 소통방법, 펫티켓 등

- 일부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동물 입양 전 교육 시범사업을 신규 추진('23)하고, 성과평가* 후 전체 동물보호센터로 확산·제도화('24)

* 시범사업 전·후 파양률 비교, 교육 완료자 만족도 조사 등

- 입양 전 의무교육은 사례 분석*,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입 방안 마련

* 독일·스위스 등 제도 도입배경, 주요내용, 추진경과 및 효과 분석(연구용역, '23)

□ (돌봄의무) 반려동물 소유자 돌봄 의무 확대

- 「학대 금지 → 신체적 건강 보장 → 정상적인 삶 보장(기본욕구 충족)」으로 발전해 온 국제적 흐름에 따라, 돌봄의무 지속 확대

- 우선, 짧은 줄(2m 미만 등)로 묶어서 기르지 않기, 자택 외 장소(축사 등)에서 기를 경우 위생·건강상태 정기관찰 도입('23.4. 시행) 시행규칙

- 적절한 운동 및 사람·동물과의 접촉 제공 등 추가 도입 검토('24)

* (독일) 사람과의 충분한 접촉, 야외에서의 충분한 운동 등을 중요 돌봄의무로 부과

- 소유자의 돌봄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방안 등도 병행하여 검토

* 해외 유사제도 추진상황 분석, 의무 위반 여부 판단기준 논의 등(연구용역, '24)

2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선진국 수준의 제도 도입

□ (범위확대) 법상 학대행위 범위를 확대하여 동물보호 사각지대 해소

- '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·먹이 제공, 적정 길이의 목줄 등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'를 학대로 명시('23.4 시행) 법
- 동물학대 개념을 '상해·질병 유발 여부'에서 '고통을 주는지 여부'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(연구, 형법학계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 마련, '24~)
- * 동물보호단체 의견 : "현행법은 명백히 동물학대로 보이는 행위라도 그 행위로 인해 동물에게 상해·질병이 유발되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"

※ (영국) 보호받는 동물(protected animal)에게 불필요한 고통(Unnecessary Suffering)을 주는 행위를 동물복지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로 규정

□ (재발방지) 형사처벌 외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추가조치 강화

- 학대행위자에게 형벌과 함께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* 제도 도입('23.4.시행) 법
- *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동물학대 행동의 진단·상담, 반려동물 소유자로서의 기본소양 교육 등 포함(법무부 협의)
- 피학대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 시 적정한 보호·관리를 위한 사육 계획서 제출 의무화('23.4 시행) 법, 계획서 이행점검 방안 마련('23.上)
- 사육계획서에는 인적사항, 동물등록정보, 동물의 적절한 사육·관리 방법 및 그 이행계획 등 포함('23.4. 시행), 이행점검과 연계 시행규칙
- 학대행위자의 반려동물 양육을 제한하는 조치를 추가 도입
- 연구용역('22~'23), 관계기관·학계 논의('23)를 거쳐 학대행위자 동물 사육금지처분 도입 등 제도개선 추진('24)

※ (독일) 동물사육금지명령 :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등이 동물학대범죄의 반복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1~5년의 기간 내에서 사육금지(판결·약식명령)

3 동물유실·유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 확대

□ (동물등록) 반려동물 유실 방지 및 반환을 위한 동물등록제 활성화

- 반려동물 판매 등 영업단계에서부터 충동적인 동물 입양 예방을 위해 사전교육과 함께 동물등록 강화를 위한 신규조치 도입('23.4. 시행) 법

현행	개선('23.4.시행)
▶ 판매업 :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반려동물 판매('21~)	▶ 생산·수입·판매업 :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반려동물 판매
▶ 미용·운송 등 서비스업 : 영업 이용자에게 동물등록제 내용·방법 등 고지('21~)	▶ 동물등록제 고지 등 실태점검·단속 * 위반시 영업정지 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

- 반려동물 소유자의 동물등록·변경신고 편의성 제고
 - 동물 생체정보(코주름, 안면인식 등)를 활용한 등록방식 도입 검토
 - * 규제샌드박스('22~'24)를 통해 기술 안정성 등을 검증하는 한편, 필요 인프라 확충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입여부 검토('24~)
 - 「정부24」를 통해 동물등록 변경신고 서비스 제공('22.11)
 - 전입신고에 따라 소유자 주소가 변경된 경우 동물등록정보에 자동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(행안부 협업, '24)
- 동물 유실 시 소유자 반환을 위해 인식표 부착 의무 개선('23.4. 시행) 시행규칙
 - * 인식표 규격·재질 및 부착방법 신설, GPS·QR코드 등 편의 기능 추가 허용 등
- 농촌(읍·면)지역 동물등록 의무화(현재 자율시행) 및 지원* 검토('24)
 - * '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' 사업 : 공무원·수의사가 신청 지역을 방문하여 해당 지역의 미등록견을 대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실시

□ (공공인수 등) 양육포기, 비계획적 번식에 따른 유실·유기 방지 제도 확충

- 지자체 동물 인수제를 도입하여 장기입원 등 소유자가 동물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* 지자체에서 해당 동물을 인수·보호('23.4. 시행) 법
 - * 인정사유(안) :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요양, 병역복무, 재난으로 인한 주택 파손 등 시행규칙
- 민간보호시설의 동물 인수 체계를 마련하고('23.4 시행) 법, 지원 방안 검토
- 길고양이, 마당개 등 중성화사업 확대 및 현장홍보 강화('23~)
- 보호동물(동물보호센터 등) 분양 시 돌봄·양육계획서 제출 의무화 검토('23)

4 개물림사고 예방·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

□ (소유자 준수사항) 반려견 관리·통제를 위한 조치 확대

- 맹견뿐만 아니라 일반견 소유자에 대해서도 보호자 없이 반려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의무 신설('23.4. 시행) 법
- 아파트, 오피스텔 등 공동생활을 하는 장소에서 반려견으로 인한 갈등, 개물림사고 등 예방 강화
 -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·가슴줄을 잡는 등 반려견의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에 준주택 추가('23.4. 시행) 시행규칙

현행	개선
▶ 다중주택, 다가구주택, 공동주택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는 등 이동제한	▶ 다중주택, 다가구주택, 공동주택, <u>준주택*</u>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... * 오피스텔, 기숙사, 다중생활시설 등

- 맹견의 경우 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처분 강화('24.4. 시행) 시행규칙
- * (현행) 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→ (개선) 300만원 이하 과태료

□ (양육관리) 개의 공격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엄격한 관리

- 기질평가제를 도입하여 맹견·사고견의 건강상태, 사육환경, 소유자의 통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개의 공격성 평가('24.4. 시행) 법
- 기질평가 수행을 위해 시·도 기질평가위원회 구성·운영('24.4. 시행) 법
-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자격 기준*, 전문가 풀(Pool) 마련 등과 함께, 기질평가 기준(지침) 마련 및 평가지원체계 구축 추진(~'24)
 - * 위원자격(안) : ①수의사 중 동물의 행동·발달 과정에 학식·경험이 풍부한 사람, ②2급 이상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을 갖춘 사람, ③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행동·훈련 관련 업무에 종사 경험이 있는 사람 등 시행령
- **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(전문가협의체, '23~'24)

- **맹견 외 사고견**은 기질평가를 통해 **맹견으로 지정·관리**(‘24.4. 시행) 법
 - 맹견으로 지정 시, **맹견과 동일하게 사육허가 및 관리 의무** (입마개 착용, 책임보험 가입 등) 부여
 - 맹견으로 지정하지 않을 때도 필요시 **교육·훈련 명령 부과**
- **맹견*** 소유자는 **동물등록·중성화** 등 조건을 갖추어 사육허가를 신청하고, 시·도에서 **기질평가**를 거쳐 허가여부 판단(‘24.4. 시행) 법
 - * 맹견 5종(도사견, 핏불테리어,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, 스태퍼드셔 불테리어,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) 및 맹견 지정된 일반견
 - 사육허가는 기질평가 및 행동교정이 가능한 월령을 고려하여 **일정 월령 이상***(예: 6개월령)의 맹견을 대상으로 추진 시행령
 - * 6개월령에 도달하기 전의 맹견을 관리하기 위해 **임시허가제** 등 도입 검토

※ 해외 주요국의 맹견 기질평가 월령

▶ (호주) 생후 6개월 / (프랑스) 8~12개월 / (독일) 15개월(그전에는 임시사육허가)

-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**교육·훈련 명령***을 부과할 수 있으며, 개의 공격성이 심한 경우 **예외적으로** 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락사도 가능

* 교육(안) : 2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이론 및 실습 교육 이수 시행규칙

□ (영업관리 등) 수입신고제 및 **맹견취급영업 허가제** 도입

- 맹견 수입(영업자·개인) 시 품종·목적·사육장소 등 신고 의무화(‘24.4)
- 맹견을 취급하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해 「일반영업허가 + 맹견영업허가(추가)」 도입(‘24.4. 시행) 법

맹견취급영업 허가를 위한 **추가 요건·준수사항**(안) 시행규칙

- ▶ (시설) 출입구 안전장치 마련, 영업장 외부에 맹견취급 표시, 개별 운동공간 제공 등
 - ▶ (운영) 맹견의 번식, 판매 등 개체 변동 시 지자체 신고 의무화
 - ▶ (인력) 생산업의 경우 20마리당 관리인력 1명 의무화, 맹견 관련 안전관리 교육 이수
-

- 선진국과 같이 맹견 영업(생산·수입·판매 등) 제한 검토(연구, ‘23~)

5 동물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관리기준 및 투명성 제고

□ (반려동물) 번식·판매 등 영업행위를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

- (영업체계 개편) 반려동물 수입업·판매업·장묘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*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('23.4. 시행) [법](#)

* (4허가) 생산업·수입업·판매업·장묘업, (4등록) 전시업·위탁관리업·미용업·운송업

- 동물전시업 등 현행 등록업에 대한 허가업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, 시설·영업기준 등 강화('24~)
- 시설·인력기준 준수 등 영업실태 점검 확대 추진(중앙·지자체 합동)

< 허가제 전환 업종(3종) 추가 준수사항 >

구분	주요 내용
수입업	· 신고한 목적과 다른 용도로 동물 사용 금지 · 반려동물 수입신고 절차 도입
판매업	· 반려동물 판매 등 표시·광고 시 영업허가번호 표시, 표준계약서 보급 · 2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 거래 준수, 건강상태 확인 등 준수사항 점검 강화
장묘업	· 등록대상동물의 사체 처리 시 장묘업체가 지자체에 신고토록 규정 · 살아있는 동물의 처리 금지

- (투명성 제고) 학대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장소를 구체화하고, 생산·수입·판매업자의 반려견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('23.4. 시행) [법](#)
- 동물판매·장묘·미용업 등 5종 영업에 대한 CCTV 설치장소를 구체화하고('23.4.시행), 향후 동물전시업 등 설치 의무 대상 확대('24~)

CCTV 설치장소 구체화(안) [시행령](#)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▶ 동물판매업(경매장) : 경매실, 준비실 | ▶ 동물미용업 : 미용작업실 |
| ▶ 동물장묘업 : 동물 사체·유골의 처리시설 | ▶ 동물운송업 : 차량 내 동물 위치공간 |
| ▶ 동물위탁관리업 : 위탁관리실 | |

- 거래내역 신고제*를 단계적으로 고도화(동물등록제와 연계한 관리 시스템 구축, 업종 확대 등)하여 반려동물 이력 관리 기반 확충('24~)

* 반려견 거래내역을 매월 지자체에 신고하고, 그 거래내역을 2년간 보관 [시행규칙](#)

-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처벌기준을 강화*하고('23.4 시행), 무허가·미등록 영업 단속을 확대 추진(지자체 건축·환경부서 합동단속 검토)

* 벌금 500만원 → (무허가) 징역 2년 / 벌금 2천만원, (무등록) 1년 / 1천만원 [법](#)

- (교육 강화) 영업자 및 종사자의 적절한 동물 보호·관리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(온라인 강의→ 현장교육 강화, '23~)
- (판매 관리) 책임있는 반려동물 분양을 위한 영업자 직접·대면 판매를 원칙으로,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 제한 등 관리·규제 강화('23~)

※ (영국) '13년 열악한 강아지 번식장에서 학대받고 구조된 '루시'를 계기로 '20년부터 6개월 미만 개·고양이 펫숍·온라인 판매 금지 등 규제강화(Lucy's law)

□ (실험동물) 3R원칙에 입각하여 동물실험윤리위 기능 확대 및 의무 강화

- (윤리위원회 기능강화) 심의받지 않은 동물실험 등에 대한 중지 요구 권한 부여, 중요 심의사항* 변동 시 변경심의 의무화('23.4. 시행) 법
- * (예) 연구책임자 변경, 실험동물 수 증가 및 종류 변경, 실험 고통등급의 상향 등 시행규칙
- 동물실험이 3R원칙에 맞게 심의될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정기교육 도입('23.4. 시행) 법
- * (교육내용) 동물보호정책,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, 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등

※ 3R원칙 : 동물실험을 할 때 지켜야 할 세 가지 윤리로, 1959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제안, 국내 「동물보호법」에도 동물실험의 원칙(제47조)으로 구현

- **Replacement** : 동물실험 없이도 연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대체
- **Reduction** : 불가피하게 동물실험을 할 때 가급적 동물의 개체수 최소화
- **Refinement** : 동물의 불필요한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실험방법 개선

- 윤리위원회 위원 중 '동물보호단체 추천 위원'의 인력 풀(pool) 관리를 위해 교육 이수, 자격 등 위원 추천의 기준 마련·제공(관련협회 협의, '23)
- (공용위원회) 사회적 영향력이 큰 동물실험 및 소규모 기관의 실험을 심의·감독하기 위한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('24.4. 시행) 법
- (전임수의사) 일정규모* 이상 동물실험기관은 실험동물의 건강·복지 관리를 위한 전임수의사제 도입('23.4. 시행) 법
- * (예) 연간 1만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기관 등 시행령
- (대체시험법) 국내·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대체시험법을 파악 (관계기관·전문가 협의, '23),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('24)
- 화장품 등 동물실험의 관리·규제 강화 방안 마련('23 연구)

□ (농장동물) 동물의 본래습성을 보장하는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활성화

- (인증제 개편) 민간 전문기관을 인증기관(現 검역본부)으로 지정하고, 인증 유효기간(3년) 및 갱신제, 이의신청·재심사 등 신규 도입('24. 시행) 법
 - 동물복지축산물 원재료 함량에 따른 동물복지 인증 표시기준*을 마련하여('24. 시행) 과장 표시 방지 등 인증제 신뢰도 제고
 - * (공통) 동물복지축산물 원재료 및 함량을 백분율(%) 표시, (95% 이상) 인증로고 사용, (70% 이상) 주 표시면 이외 표시면에 '동물복지' 용어 사용 등 (검토중) 시행규칙
 - (추가개선·확산) 도축·운송 등 동물복지 기준 개선 및 축산분야 확산
 - 동물복지 도축장·운송차량 지정기준(운송시간 등)을 개선하고('23) 동 기준 중 필요한 부분은 전체 도축장·운송차량으로 적용 검토('24)
 - * (업계) 출하를 위해 필수적인 동물복지 도축장 기준이 까다로워 인증제 참여저조로 작용
 - * (동물보호단체) 도축과정에서 동물에게 큰 스트레스 유발, 설비의 획기적 개선 등 필요
 - 동물복지 축산방식 확산을 위해 인증대상 축종* 및 시설**에 대한 단계적 확대 추진(이해관계자·전문가 논의 등, '25~)
 - * (현행) : 산란계, 양돈, 육계, 한·육우, 젖소, 염소, 오리(7종) → 메추리 등 추가 검토
 - ** (현행) 농장, 도축장, 운송차량 → 부화장, 종축장 등 추가 검토
 - (지원·홍보) 인증 컨설팅, 축산 정책자금 우대 등 농가 지원과 함께, 동물복지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추진
 - 인증 컨설팅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동물복지 분야에 특화된 축산 컨설턴트(현재 사양·질병·경영관리 중심)를 중점 육성('24~)
 - * 동물복지 컨설턴트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신규사업 확보('23)
 - 윤리적 소비 확산추세에 맞춰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특화된 사육 방식 등 현장체험형 홍보 확대 및 소비자단체 협업 강화('22~)
- ※ 영상·미디어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* 마련(~'23) 등 동물보호 사각지대 해소 지속
- * 영화, 드라마 등 촬영 현장에서 출연동물의 보호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(예: 인근 동물병원 확보, 휴식공간 마련, CG 등 대안 검토)을 업계·전문가 의견수렴 거쳐 마련

◇ 동물학대 · 유기 처벌수준 합리화 및 피학대 · 유기동물 보호여건 개선

① 동물학대 대응 실효성 강화

□ (처벌) 학대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처벌·제재 유도

- 「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*」 마련 협의(대법원 양형위원회, '23~'24)

* 법관이 형을 선고할 때의 참고기준으로, 양형기준 이탈 시 그 이유를 기재토록 하여 일정 구속력 부여 / 현재 살인·성범죄 등 44개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음

-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동물 몰수 등 학대행위자에 대한 제재 강화 검토(연구용역, 형법학계 논의 등, '23~'25)

※ (프랑스) 동물을 압류·몰수하고, 관련 직업 또는 사회적 활동 금지 규정(5년내)
(대만) 학대 방지를 위해 동물을 즉시 몰수 또는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몰수

□ (과학적검증) 동물학대 판단을 위한 전문검사 등 과학적 지원체계 구축

- 동물학대 신고자, 지자체 등이 학대여부 판단을 위한 동물 부검·진단을 전문기관*에서 수행('23.4 시행) 법

* 농림축산검역본부(국과수 협업) 또는 시·도 동물위생시험소

- 지자체 검사기관 등을 위한 동물 부검·진단 가이드라인 배포('23)

- 과학적인 동물 사인(死因) 규명을 위한 수의법의학* 기반 마련

* 수의법의학(Veterinary Forensic Medicine, 법수의학) : 동물대상범죄 수사를 과학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체 부검 등 법의학적 감정 관련 학문 / 우리나라는 현재 학문체계 부재

- 검역본부 전문인력 확충(행안부 협의, ~'23)과 함께,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수의법의학 학문체계 정립('24)

* 수의법의학 관련 학회 설립 등을 통해 학계 논의·연구 기반 마련('23)

□ **(사후보호) 피학대동물 구조·보호 등 적극적인 현장 대응 체계 확립**

- 피학대동물 구조·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구조·보호기간을 확대 및 구조·보호비용 현실화 추진
 - 동물의 적절한 치료 및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**피학대동물 구조 후 소유자로부터 격리**해야 하는 보호조치 기간 확대('23.4.시행) 시행규칙
 - * 수의사 진단에 따른 보호조치 기간 : (현행) 최소 3일 → (개선) 최소 5일
 - 보호조치 기간 경과 후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**구조·보호비용** 기준 (현행 시·도 조례로 규정) 마련·배포('23~'24)
 - * ('23) 구조·보호비용 실태조사 → ('24) 지자체 등 의견수렴 및 지침 마련
- 「**동물학대 대응 매뉴얼**」 마련 및 지자체 등 일선현장 배포('23)
 - 매뉴얼에는 **동물학대행위 해설, 단계별 대응요령**(신고-현장대응-사후관리) 등을 수록하여 지자체 신규공무원 등 현장업무 전문성 제고

<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구상(안) >

- ▶ **(동물학대 대응)** 기본 대응 요령, 학대 대응 세부절차(신고방법, 처리절차, 피학대 동물 보호·격리 조치, 피학대동물 사육 관리, 학대자 교육·상담 등)
- ▶ **(동물보호법 일반, 동물학대금지규정 해설)** 기본개념(소유자등, 반려동물 등), 동물보호법 제8조(동물학대 등의 금지) 제1항~제5항 판례 및 해설, 사례 등

- 동물학대 조사·구조 등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**동물보호관** (지자체)과 **명예동물보호관**(동물보호단체 등) 간 협력 강화('23~)
 - * 명예동물보호관 역할 : (現) 동물보호관 지원, 단순계도 → (개선안) 학대 공동조사 등
- ** 많은 학대사례 신고 등이 있으나, 조사·구조 지연이나 주인에게 반환되어 2차 가해 등 발생이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 역할 부여 요청 (동물보호단체)

※ **영국 : 동물학대방지 자선단체(RSPCA, 1824년 설립)**

- 동물학대에 대한 조사·수사(investigation) 등 업무 담당
 - * 2020년 57,000건의 동물학대 사례 수사 실시/ 연 100만건 이상 전화상담 접수
-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권고·교육을 제공하고 권고 등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, 경고(warning) 또는 기소(primary prosecution) 가능

2 동물보호시설 개선 및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

□ (지자체) 동물보호센터의 관리·감독 및 동물복지 기능 강화

- 보호센터 내 동물학대 예방 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*하고, 시설 종사자 의무교육**을 도입('23.4 시행) 법
 - * 설치위치 :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보호시설 내 동물의 보호실 및 격리실 시행령
 - ** 동물보호법령 등 연간 3시간 이상, 미이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- 동물보호센터 인력기준*을 신설하여 보호동물 관리수준 제고('23.4, 시행) 시행규칙
 - * 보호동물 20마리당 1명 이상의 보호·관리인력 확보 등
- 시설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중앙·지자체 합동점검 정례화('23)
- 보호센터의 역할을 구조·보호에서 유기·학대 예방·홍보 등으로 강화하면서('23.4), '동물복지지원센터'로 명칭 변경 검토('24)

□ (민간)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및 환경개선 사업 지원

- 동물의 적절한 보호·관리를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* 및 시설·운영기준 준수 의무 마련('23.4. 시행) 법
 - * 민간동물보호시설 :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유실·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설
 - ※ 시설 기준 등 신고제 요건 충족을 위해 2년의 유예기간 부여
- 보호동물이 20마리 이상(개·고양이 기준)인 경우 지자체 신고 의무화* 시행령
 - * 신고시설에 대해 보호실·격리실 등 구분 설치, 동물 보호·관리 인력 확보, 동물별 개체관리카드 작성·보관 등 시설·운영기준을 준수토록 관리 시행규칙
- 민간보호시설의 시설·운영여건 등 실태조사를 토대로 법령개정, 시설보완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* 마련('23.上)
 - * 불법입지, 열악한 시설 및 보호, 시설 운영포기에 따른 유기동물 발생 등 개선
- 기존에 운영 중인 시설의 신고제 편입 유도를 위해 시설보완 등 환경개선 지원(매년 15개소 이상)
- 신고제 기준 충족 시 「가축분뇨법」, 「농지법」 등 시설 입지 관련 규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(환경부, 지자체 등) 협의(지속)

□ **(입양활성화) 시설 확충 및 홍보를 통한 입양 활성화 및 안락사 최소화**

-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확충을 통해 동물의 관리 여건 개선 및 유실·유기동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 완화(11개소 지원, '23)
 - * ('19) 53개소 → ('20) 52 → ('21) 68 / ('22~'23) 신규 22개소(개·보수 1) 반영
- 동물보호센터의 총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유실·유기동물 보호기간 확대 방안 등에 대해 검토 (센터 실태조사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, '23)
 - * (현행) 동물 구조 시 7일 이상 공고, 공고 시작일 기준 10일 경과 시 지자체 소유권 취득 → (개선안) 소유권 취득과 별개로 센터 내 의무 보호기간 별도 지정(예:30일 등)
- 접근성 높은 도심 지역에 전문 입양센터를 설치하여 유실·유기동물의 입양 홍보 및 훈련 지원 등 추진(2개소 지원, '23)

※ 서초구 유기동물입양센터 : 동물보호센터(경기 양주)에서 보호 중인 유실·유기동물을 서초구 소재 입양센터에 데려와 건강검진·미용·재사회화 등을 거쳐 분양

3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 대피 체계 구축

□ 「**재난 시 반려동물 대피요령 지침**(지자체용/국민용)」 **실행력 제고**

- 지자체 여건에 맞게 「재난 시 반려동물 대피요령」을 마련·운영하고, 사전에 대피시설·구호물품을 확보하도록 관리('23)
- 반려동물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재난 시 대피·대응 관련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제공(동물사랑배움터, '23)

□ **동물보호센터, 주민대피시설 등 재난 시 동물보호시설 확충**

- 동물보호센터에 재난 시 반려동물 임시보호 체계* 마련('23)
 - * 재난 대응 시 별도의 수용공간 마련·격리, 동물 구조 및 수의료체계 구축, 동물 등록 및 소유자 정보 관리를 통해 반환 등 표준운영지침 마련
- 반려동물 동반 대피소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(행안부·지자체 등) 협의('22~)

※ 미국 : 반려동물 대피 및 수송법(2006)

- 연방응급관리기관(FEMA)은 반려동물 등을 동반한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 비상대피소의 시설·자재 조달, 개조 등을 포함하여 주·지방 당국 재정 지원
- 지방정부가 연방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난 대응 계획에 동물 사항 의무적 포함

① 폭넓은 동물복지 정책 논의·조정을 위한 거버넌스 마련

□ (위원회) 「동물복지위원회」 위상 격상 및 전문성 제고

- 기존 민간위원회(민간전문가 등 10인)에서 농식품부차관·민간위원 공동위원장 포함 20인으로 위원회 위상 격상('23.4. 시행) 법
- 반려·실험·농장 등 3~4개 분야에 대해 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분과위 구성·운영('23.4. 시행) 시행령

□ (기능·역할) 동물복지위원회 정책 논의·조정 기능 강화

- 타부처 소관 업무 중 동물보호·복지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회 자문 범위에 추가('23.4. 시행) 법
 - 환경부·해수부·식약처 소속 국장급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
 - * (환경부) 야생동물, 동물원, (해수부) 수족관, (식약처) 실험동물 등
- 동물복지 관련 각종 이슈를 정리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영업자, 연관산업협회 등 참여위원 확대('23~)

② 동물복지를 전담하여 관리·지원할 중앙·지방 추진체계 마련

□ (조직확충) 동물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중앙·지방 조직 보강

- 동물보호·복지 정책 기획·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에 전담조직 신설 검토(관계기관 협의, '22~)
- 정책 집행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전담부서 마련 및 인력 확충 노력
 - * 전담부서 현황(동물복지과 등) : (광역) 11개/17개 시도, (기초) 84개/228개 시군구

□ (지원기관) 전문적인 현장 집행 기능을 수행하도록 관련 기관 기능 강화

- 맹견 기질평가 기술지원, 동물실험대체법 보급,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등 현장 집행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기관 지정·위탁('23~)

VI. 향후 일정

□ 연구, 해외사례 조사 등을 거쳐 정책과제의 추진방식 구체화

- 개별 과제의 현장 수용성과 실용성 제고를 위해 동물보호단체, 영업자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 등 구체화 및 추진

* 인력확충 및 예산확보 상황(관계부처 협의), 연구용역 결과 등 감안

- 해외사례 추가 조사 및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등 추진

< 「동물복지 강화 방안」 세부과제별(총 77개) 분류 >

구분	수단별 분류	신규(44개), 강화(33개)
제도개선 과제	「동물보호법령」 개정 30개	신규 17개, 보완·강화 12개
	가이드·지침 마련 등 25개	신규 14개, 보완·강화 12개
예산사업 과제	시설지원, 홍보 등 11개	신규 5개, 보완·강화 6개
연구·검토 과제	연구용역·의견수렴 등 11개	신규 8개, 보완·강화 3개

□ 내년도 시행 예정인 제도* 관련 「동물보호법」 시행령·규칙 개정

*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,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, 동물실험 관리 강화 등

※ 일정 : ('22.12) 입법예고 → ('23.1~'23.3) 규제·법제심사 → ('23.4) 차관·국무회의 → ('23.4.27) 시행

- '24년 시행 예정 제도 관련 「동물보호법」 시행령·규칙 후속 개정('23.下)

□ 예산사업*의 경우, '24년 농식품 예산(안)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

*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비, 반려동물 특화 사업 발굴·지원 등

참고

세부과제별 추진일정

추진과제	일정	소관부처
전략 1 :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추진기반 마련		
① 「동물복지법」으로의 개편		
○ 통합「동물복지법(안)」 또는 분야별 법률(안) 마련 신규	'23.下	농식품부
② 민간중심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개선		
○ 동물보호단체와 교육·홍보사업 등 협력사업 추진 신규	'23~	농식품부
○ 동물학대, 유실·유기동물 보호 관련 동물보호단체 협업 강화 신규	'23~	농식품부
○ 「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대책」 마련 신규	'23.上	농식품·기재금융
○ 반려동물 특화 사업 발굴·지원 신규	'24~	농식품부
○ 「연간 동물 돌봄 영향보고서」 발간 신규	'24~	농식품부
③ 양육·돌봄 실태 등 동물복지 통계 구축		
○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→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개편 강화	'23~	농식품·통계청
○ 반려동물 연관산업 실태조사 실시 신규	'24~	농식품부
○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구축 및 공개 신규	'24	농식품부
전략 2 : 사후적 처벌 중심에서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확대		
① 반려동물 소유자의 돌봄 제공 강화		
○ 온라인 교육플랫폼(동물사랑배움터) 시스템 개편 강화	'22~	농식품부
○ 동물보호센터 대상 입양예정자 교육 시범 추진 신규	'23	농식품부
○ 동물 입양전 의무교육 도입 관련 연구용역 추진 신규	'23	농식품부
○ 짧은 줄 사육 금지 등 소유자 돌봄의무 확대 강화	'23.4	농식품부
○ 돌봄의무 확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방안 검토 신규	'23~'24	농식품부
②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선진국 수준의 제도 도입		
○ 학대행위에 반려동물 돌봄위반으로 사망 추가 강화	'23.4	농식품부
○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까지 학대로 검토 신규	'24	농식품부
○ 학대행위자 대상 수강·이수명령 부과 신규	'23.4	농식품부
○ 피학대동물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 의무화 신규	'23.4	농식품부
○ 동물사육금지처분 도입 검토 신규	'22~'23	농식품부
③ 동물유실·유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 확대		
○ 생산·수입업의 동물등록(신청) 후 판매 의무화 강화	'23.4	농식품부
○ 서비스업자의 동물등록제 고지 의무 등 실태점검 강화	'23.上	농식품부
○ 동물생체정보 활용 등록방식 규제샌드 박스 추진 강화	'22~'24	농식품·과기정통
○ 전입신고(주소변경) 시 자동등록변경 시스템 구축 신규	'24~	농식품·행안
○ 농촌(읍·면)지역 동물등록 의무화 검토 강화	'24	농식품부
○ 지자체 및 민간보호시설 동물인수체계 마련 신규	'23.4	농식품부
○ 길고양이 및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 확대 강화	'22~	농식품부
○ 보호동물 분양 시 돌봄·양육계획서 제출 의무화 검토 신규	'23~	농식품부

추진과제	일정	소관부처
4] 개물림 사고 예방·관리 체계 대폭 개선		
○ 소유자 없이 반려견 외출 금지 의무 부과 강화	'23.4	농식품부
○ 준주택 내 공용공간에서 반려견·맹견 이동 제한 강화	'23.4	농식품부
○ 맹견의 실내 관리의무 위반 시 과태료 처분 강화 강화	'24.4	농식품부
○ 기질평가제 도입 및 평가위 구성·운영(맹견지정포함) 신규	'24.4	농식품부
○ 기질 평가 위원 인력풀(pool) 및 평가지침 마련 신규	~'24	농식품부
○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신규	'24.4	농식품부
○ 맹견수입신고제 및 맹견취급영업허가제 도입 신규	'24.4	농식품부
○ 맹견 영업(생산·수입·판매 등) 제한 검토 신규	'23~	농식품부
5] 동물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윤리성 및 복지수준 제고		
<반려동물 관련 영업>		
○ 수입·판매·장묘업 허가제 전환 강화	'23.4	농식품부
○ 전시업 등 등록업의 허가제 전환 및 영업기준 강화방안 마련 강화	'24~	농식품부
○ 중앙·지자체 합동 영업자 실태점검 실시 강화	'22~	농식품부
○ 생산·수입·판매업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 신규	'23.4	농식품부
○ 반려동물 이력관리 기반 마련(거래내역신고제 확대 등) 신규	'24~	농식품부
○ 영업자에 대한 현장교육 도입 강화	'23~	농식품부
○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 관리·규제 강화 강화	'23~	농식품부
<동물실험>		
○ 윤리위에 실험중지요구권 부여 및 변경심의 의무화 신규	'23.4	농식품부
○ 윤리위원 대상 정기교육 의무화 신규	'23.4	농식품부
○ 동물보호단체 추천위원의 교육 이수·자격 등 기준 마련 신규	'23.下	농식품부
○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·지정 신규	'24.4	농식품부
○ 동물실험시행기관 전임수의사제 도입 신규	'23.4	농식품부
○ 동물대체시험법 해외사례 등 조사·제공 신규	'24~	농식품부
<동물복지축산>		
○ 동물복지축산 인증 갱신제 도입 신규	'24.4	농식품부
○ 원재료 함량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 인증 표시기준 마련 신규	'24.4	농식품부
○ 동물복지 도축장·운송차량 지정기준 개선 강화	'23	농식품부
○ 동물복지축산 인증대상 축종·시설 단계적 확대 강화	'25~	농식품부
○ 동물복지 분야에 특화된 축산 컨설턴트 육성 신규	'24~	농식품부
○ 소비자단체 협업을 통한 현장 체감형 홍보 추진 강화	'22~	농식품부

추진과제	일정	소관부처
전략 3 : 동물보호·복지 사후조치 실질화		
① 동물학대 대응 실효성 강화		
○ 「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」 마련 협의 신규	'23~'24	농식품·대법원
○ 학대행위자 제재 강화 관련 연구용역 추진 강화	'23~'25	농식품부
○ 동물학대 관련 부검·진단 가이드라인 배포 신규	'24.上	농식품부
○ 수의법의학 관련 검역본부 전문인력 확충 강화	'24~	농식품·행안
○ 피학대 동물의 격리·보호조치 기간 확대 강화	'23.4	농식품부
○ 동물 반환시 청구하는 구조·보호비용 지침 마련 신규	'23~'24	농식품부
○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지자체 배포 신규	'23.上	농식품부
○ 명예동물보호관에게 조사·구조 등 권한 부여방안 검토 신규	'23~	농식품
② 동물보호시설 개선 및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		
○ 동물보호센터 종사자 의무교육제 도입 신규	'23.4	농식품부
○ 동물보호센터 인력기준 신설 신규	'23.4	농식품부
○ 동물보호센터 중앙·지자체 합동점검 정례화 강화	'23~	농식품부
○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및 시설·운영기준 마련 신규	'23.4	농식품부
○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 강화	'22~	농식품부
○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시설 운영 방안 등 검토·협의 강화	'23	농식품·환경부
○ 직영 동물보호센터 및 전문 입양센터 확충 강화	'23~	농식품부
○ 유실·유기동물 의무 보호기간 확대 검토 강화	'23~'24	농식품부
③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 대피 체계 구축		
○ 지자체별 「반려동물 대피요령」 마련·운영 관리 강화	'23~	농식품부
○ 반려동물 소유자 대상 재난 대피 교육프로그램 마련 신규	'23	농식품부
○ 동물보호센터 내 반려동물 임시보호체계 마련 신규	'23	농식품부
○ 반려동물 동반 대피소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강화	'22~	농식품·행안
추진기반 : 정책 방향 조정 및 집행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		
① 논의·조정을 위한 거버넌스 마련		
○ 동물복지위원회 확대(위원 10명 → 20명), 당연직 위촉 강화	'23.4	농식품·환경·해수식약처 등
② 동물복지전담 추진체계 마련		
○ 농식품부 및 지자체에 전담 조직·부서 마련 검토 강화	'22~	농식품·행안·기재
○ 집행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 기관 지원·확대 강화	'23~	농식품·기재